

# 사료작물 농사도 농업의 한 부분이다.

한 우 경  
한일축산인 친목회

작년도 농사작황에 있어 냉해 등 천재로 인한 피해가 많다고들 한다. 그렇다면 그 정확한 피해면적은 얼마나되며 그 금액은 또 얼마나 되는지, 특히 그중에서 일반 경종농업을 제외한 특수농업 분야인 사료작물의 피해면적은 어느 정도나 되며 그 금액은 얼마나되는지 궁금하며 더더욱 그 피해보상에 대하여는 여론화도 되지않고 있을뿐이어서 피해농민 당사자는 발을 동동거리며 한숨짓고 있다.

우리나라의 축산농가는 사료작물 농사가 별도로 없어서 그런것인지, 아니면 피해액이 얼마되지 않아서 그런것인지는 모르겠다.

필자는 며칠전 일본인 친구로부터 약이 오를 정도로 기막힌 자료하나를 송부받았다. 그 자료에서 보니 일본에는 「천재융자법」(天災融資法)과 「격심재해법」(激甚災害法)이라는 법이 있었다. 그래서 일본의 농림수산성은 '93. 1. 14일자로 '93년도에 발생한 장마피해, 태풍피해(13호 태풍피해) 그리고 저온으로 인한 냉해 등에 대하여 취합 확정하여 11월 10일자로 일본 정부의 관보로 공표한다고 한다.

필자가 작년 9월말에 서부일본지역을 방문하여 보고 그 태풍피해가 심각함을 실감하고 온 바 있다. 그런데 오늘 내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그들의 조직적인 피해상황 조사와 보상에 있다 하겠다.

물론 수도작물 등 일반작물 피해가 태반을 차지하고 있음은 물론이나 그중에 사료작물 피해도 상당히 언급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즉 사료작물 피해내용을 보면 장마피해액 61억 9천백만엔, 냉해피해액 314억엔, 태풍피해액 19억8천만엔이나 되어 일본정부에서는 천재융자법을 발동함과 동시에 격심재해법도 적용하기로 하였다 한다.

천재융자법이 적용되는 피해농가의 자격은 연간 수확예상량의 30%이상 이 감소되어 연간 수입금액의 10%이상의 손실이 예상되는 농가에 해당되며 융자한도액은 개인 200만엔(약 1천5백만원)이내, 법인 2천만엔 이내로 3~6년간을 저리로 융자하여 준다고 한다. 또한 격심재해법의 지정을 받게되면 다시 융자한도액은 개인이 250만엔(약 1천7백75만원)이내에 4~7년 상환이 된다고 한다.

또한 유우가 생애장등으로 유실되었을 경우에는 그 유우에 대하여는 보상금액이 별도로 고료되지 않으나 다만 그 유우가 생산할 수 있는 예상유량에 대해서는 손실액으로 산정하여 준다고 한다.

이러한 손실액을 산출한 농림수산성의 경제국 금융과에서 언급한 바에 의하면 “이렇게 보상하여 주면 축산농가의 손실은 대체사료를 구입할 비용 정도가 실제적인 손실액이 될 것이다.”라고 장담하고 있다.

경종농업과 병행하여 가축을 사육하는 것은 극히 정상적인 경영방식이다. 그렇다면 경종농업과 유축농업이 불가분의 등식이란 뜻임에도 유축농업을 위한 사료작물이 외부적인 천재조건으로 피해를 당하였을때에 그에 대한 보상이 과연 경종농작물과 사료작물과를 균등하게 보아주고 보상하여 주고 있는지 궁금함을 금할길이 없어 오늘 이 글을 적어본다.